

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나25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자 2023재나137 결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20다3464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나25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소1718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고

담당변호사 백경아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19. 8. 29.

판결 선고2020. 2. 1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소1718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10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0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02. 10. 30. 17: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끝 지점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으로 피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4,891,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을 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 773,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함에도 각종 병원과 한의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4,891,1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 후 3주간의 치료비 787,020원만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위 치료비 합계 24,891,190원에서 위 787,020원을 공제한 24,104,17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24,104,1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일이 지난 2002. 11. 4. F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 '다발상염좌(경추, 요추, 좌견갑부)', 치료일수 '2주'로 하는 2002. 11. 9.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위 병원에서 2002. 11. 4.부터 2003. 1. 8.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 1. 16.부터 2005. 2. 11.까지 사이에 52일 동안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4. 5.경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5-6 경추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으로 하는 2004. 5. 28.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5. 5.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H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치료일수 '2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2.경 I병원에서, 2015. 12.경 J한의원에서 한방진료를 각각 받으면서 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5)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년경 K정형외과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각각 진료를 받으면서 병명 '경추부·요추부염좌, 추간판장애 등'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6) 그런데 의사 L은, ㉠ 피고에 대한 경추부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경추부 추간판에 신호 강도 감소가 관찰되는바, 이는 퇴행성 소견을 시사하고 경추 5~6번 추간판의 미만성 후방으로의 팽윤과 우측 구상돌기의 비후 소견을 시사한다'는 내용의, ㉡ 요추부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미만성 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의 탈출 또는 돌출과 척추관 협착의 뚜렷한 증거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방사선과판독소견서(갑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7) 또한, 이 법원의 M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2002. 11. 22. 경추 MRI 및 2002. 12. 26. 요추 MRI 판독결과를 보면, 경추 제5-6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uncinat process(척추 관절면의 하나)의 비후가 관찰되는데, 이는 100% 퇴행성 병변을 나타내는 소견이고,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디스크 탈출증도 퇴행성 병변이다. 사고로 인한 외상의 소견을 보이려면 퇴행성 변화가 아닌 인대 또는 디스크 파열, 척추 골절 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외상에 의한 소견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G병원에서 작성한 피고에 대한 척추환자 설문조사결과에서 피고의 손발이 빠근하고 목이 뚝뚝 소리가 나는 증상도 퇴행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따라서 피고가 수상후 약 2~3주간의 급성기 통증에 대하여 받은 치료 외의 치료는 외상으로 인한 수상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퇴행성 경추 및 요추부 디스크 등에 대한 치료로서 모두 기왕증에 대한 치료이다. 그리고 외상에 대한 치료는 수상 후 약 2~3주간이므로 이미 종료되었다.'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3주 동안 피고에 대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787,0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감정 당시 감정의 대상이 되는 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 당시 현존하는 후유장애의 내용을 확인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02. 11.경부터 2016년경까지 무려 13년 이상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여러 병원의 진료를 받아왔으나, 각 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일수는 약 2주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용 역시 비교적 소액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소간에 경미해 보이는 점, ㉠ 앞서 본 각 방사선과판독소견서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경추부·요추부에는 퇴행성 병변만이 관찰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추간판 탈출 또는 돌출 등과 같은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의 감정의 또한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약 2~3주간의 통증에 대한 치료 이외의 치료는 모두 기왕증에 대한 치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치료는 이미 종료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24,891,190원 중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주 동안의 치료비 787,020원만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치료는 모두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닌 피고의 기왕증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24,891,190원 중 위 787,0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104,170원(= 24,891,190원 - 787,02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24,104,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판사이석준

판사허서윤